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하고 국가에서 세금은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 역시 일정한 기간내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두가지 즉,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이 두가지는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만,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근본적으로 소멸되므로 국세와 관련된 권리 · 의무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종료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못하여 국세징수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제척기간 만료 전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 혹은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는 세목별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세목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무신고 등 납세자의 성실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척기간이 정해지게 되었다.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해당 국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계산서 불성실기산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산세 납부대상이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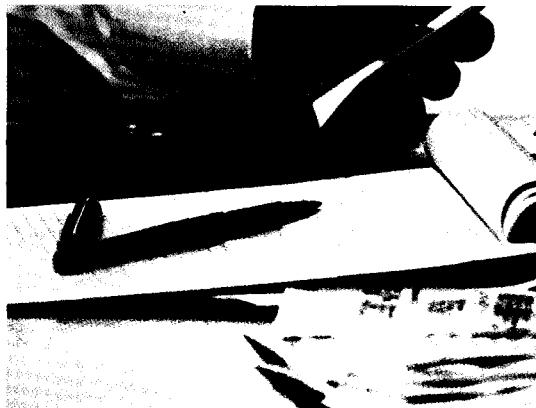
②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위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
다만, 위의 ②와 ③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납세고지 등으로 그 기간이 중단, 갱신되지 않으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만료되면 그 후에는 과세관청이 결정·증액경정·감액경정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되기 전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취소 내지 일부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부과권이 없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및 환급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조세

조약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송 등을 통해 명의 위장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을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불합리한 조세채권의 소멸 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징수권은 정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의 확정이 된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 등이 있으며 이들 국세는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익일이 된다.

상속·증여세 등과 같이 정부가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납세·납부 고지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인지세, 원전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지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등 타 세목과 같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의 효력이 없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소멸시효기간의 전 기간(5년)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와 각 사유별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납세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교부청구 ⇒ 교부청구 종의 기간이 지난 때
- 압류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

따라서 확정된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5년을 버티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독촉장 한 장이면 소멸시효의 중단 제도에 의하여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납세 여력이 되는 한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빨리 내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납세고지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의 흠흠결에 의하여 납세고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은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납세 고지된 부분 및 그 세액에 한정되는 것이며 고지되지 아니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된다.

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을 일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유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완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른 개념이다. ↳

